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관련 공시 강화

최근 국회에서 자기주식과 관련된 다수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건수가 자본시장에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관련 주요내용이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은 기존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교환사채 발행 관련 주요정보를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관련 공시 강화에 대한 주요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결정 공시 현황

최근 3년 간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결정 공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5년 3분기 중 교환사채 발행결정 규모는 50건, 14,455억 원으로 전년도 총 발행 수준(28건, 9,863억 원)을 상회하였습니다. 특히, '25.9월 중 교환사채 발행결정이 39건, 11,891억 원으로 3분기 발행결정규모의 78.0%(건수기준)를 차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회사, 자본시장, 투자자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결정 공시추이>^{주1)}

(단위: 건, 억 원)

구분	'23년	'24년	'25년	
			'25년 상반기	'25년 3분기(9월)
발행건수	25	28	17	50(39)
발행금액	32,237 ^{주2)}	9,863	9,997	14,455(11,891)

주1) 최종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일 및 내용 기준(태광산업 발행예정금액 3,186억 원이 9월 현황에 포함)

주2) SK하이닉스(2.24조 원) 포함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관련 주요내용이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가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국, 2025.10.17.(이하, "기업공시서식 개정 보도자료")

<교환사채 발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영향>

구분	내용
회사	-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교환사채 발행을 급하게 추진하는 경우, 소각 등 주주환원을 기대하였던 주주들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면서 결국 기업가치에도 악영향 우려

구분	내용
자본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교환사채 발행 결정 이후 주가가 하락¹⁾하는 등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바, 교환사채 발행 급증이 지속 확대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 및 교환 받은 자기주식 물량의 시장 출회 등으로 주가 급락 등 주식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 - 사모 교환사채 발행으로의 쏠림 등 회사채 시장의 불균형 우려
투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사채 발행이 대부분 사모로 이루어지고 이후 재매각 가능성이 있음에도 발행 관련 의사결정 배경 및 타당성 검토내용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출처: 기업공시서식 개정 보도자료

2. 기업공시서식 개정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은 교환사채 발행결정 시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공시 작성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즉시 시행함으로써 기업이 주주총실의무 도입에 따라 주주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주주 중심의 경영활동 정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번 기업공시서식 개정이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환사채 발행 의사결정 등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판단과 평가를 기대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밝혔습니다.

<기업공시서식 개정 주요내용>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시 「**교환사채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 주요사항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① 타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선택 이유
- ②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
- ③ 실제 주식교환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④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 ⑤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 ⑥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등

또한,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 자기주식 관련 공시위반행위 발견 시 정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²⁾

1) '25.9월 중 교환사채 발행결정을 최초 공시한 36사 중 25사(69.4%)의 익일 주가가 하락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025.9.26.)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사점

금융감독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 공시서식 등 개정을 통해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에 대한 공시 및 제재를 강화하는 등 자기주식이 주주환원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에 따라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부담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상장법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를 “외부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및 투명성 증대” 및 “우호주주 확대의 기회”로 삼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시기준 개정에 따라 투자자는 사채의 발행 배경과 잠재적 리스크(예: 주가 하락, 지분 희석)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되며,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우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YCGC)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다양한 자문과 함께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 대응 등에 대한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관련 기업공시서식 개정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업공시서식 신규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지 제38-26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교환사채권 발행결정</p> <p>(중략)</p> <p><기재상의 주의> 주1) ~ 주11) (생략)</p> <p>주12)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p>	<p><별지 제38-26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교환사채권 발행결정</p> <p>(현행과 같음)</p> <p><기재상의 주의> 주1) ~ 주11) (현행과 같음)</p> <p>주12)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u>다만, 교환대상이 자기주식인 경우에는 다른 보유 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또는 여타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한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 실제 주식교환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 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우선기관이 있는 경우 우선기관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u></p>

현행	개정안
주13)~주18) (생략)	주13)~주18) (현행과 같음)
<p><별지 제38-33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자기주식 처분 결정</p> <p>(중략)</p> <p><기재상의 주의></p> <p>주1) ~ 주11) (생략)</p> <p>주12)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특히, 주식기준보상으로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부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대상 인원수, 가득조건 등 주요내용을 추가로 기재한다.</p>	<p><별지 제38-33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자기주식 처분 결정</p> <p>(현행과 같음)</p> <p><기재상의 주의></p> <p>주1) ~ 주11) (현행과 같음)</p> <p>주12)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특히, 주식기준보상으로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부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대상 인원수, 가득조건 등 주요내용을 추가로 기재한다. <u>또한 교환대상이 자기주식인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유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또는 여타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한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 실제 주식교환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 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u></p>
주13) ~ 주16) (생략)	주13) ~ 주16) (현행과 같음)

Related Areas

기업지배구조 센터

Contact

은성욱 변호사

02-528-5305

sweun@yulchon.com

김현정 변호사

02-528-5150

hyunjeong@yulchon.com

문성 변호사

02-528-5393

smun@yulchon.com

최기림 변호사

02-528-5706

klchoi@yulchon.com

오용석 고문

02-528-6436

yongsukoh@yulchon.com

정한욱 전문위원

02-528-6116

hwjung@yulchon.com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